

1 지원규모

- 50개 시장 내외

2 사업기간

- 선정 시 ~ '25. 12월

3 지원대상

1) 시장단위
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'전통시장')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 - 영업점포의 30%*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
 - * 단, 공단 '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'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,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% 이상 신청한 곳(전통시장 통통'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)
 -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% 이상인 곳 (공고마감일 기준)

2) 개별점포단위
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'전통시장')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(전기부문'만 신청 가능)
 - 전기안전등급 D,E등급*인 점포
 - *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3호 및 [별표6] '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' 적용하며,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,E등급 여부 확인 예정
 -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(공고마감일 기준)

4 지원조건

- (추진주체)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- (지원 한도)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500만원(시장규모에 따라 최대 15억원)

<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>

신청점포수	100개 미만	100개 이상 ~ 500개 미만	500개 이상
총 사업비(최대)	500백만원	1,000백만원	1,500백만원
국비(70%)	350백만원	700백만원	1,050백만원
지방비·자부담(30%)	150백만원	300백만원	450백만원

* 시장규모별 분류기준(소형, 중형, 중대형 이상) 적용

**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

- (매칭비율) 국비 70%(350만원 이내), 지방비·자부담 30%(150만원 이내)

* 자부담비는 지방비로 대체 가능

-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

- (공통) 개별점포당 500만원 한도이므로, 시장당 “신청점포수 × 500만원” 한도 내에서 사업비 편성

- (전기부문) LED 전등기구 등 화재예방에 간접적인 설비는 점포당 50만원 이내로 한정

* 재료비로 한정(인건비 불가)하며 부가세를 포함하여 편성

- (전기부문)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문 의무화(2회)로 사업비 내 자문 수당 포함하여 편성

< 자문수당 책정기준 >

구분	사업 설계 시	시공 후 검수 시	
시장단위	시간당 10만원 (최대 30만원 이내)	점검점포 100개 미만	6만원
		점검점포 100~200개 미만	5만원
		점검점포 200개 이상	4만원
개별점포단위	점포당 6만원	점포당 6만원	

- (소방부문) 설치 시설물 사후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 편성

- (공용구간) 총사업비(시장당 선정금액) 10% 이내로 한정

5 지원내용

※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

- (안전시설물 설치) 개별점포의 화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전기, 소방, 가스, 기타분야 시설물 개선·설치

사업부문	사업 내용
전기	▶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(차단기 및 분전반, 옥내배선, 콘센트, 스위치 등)
소방	▶ 개별점포별 화재알림시설(감지기, 수신기, 속보기 등), 설치 ▶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품목
가스	▶ 개별점포별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(가스 보관함, 가스누출 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)
기타	▶ 개별점포의 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▶ 풍수해, 폭염·폭설·폭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

<사업내용 가이드라인>

- **전기부문** :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
 -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개별점포 지원으로 인정(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공용 구간 사업비로 편성)
 -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(인건비+재료비 등) 편성

1순위	2순위	3순위
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	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	기타(재료비 한정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연·난연성 분전함 교체 ○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○ 아크차단기 등 누전차단기 이상의 성능이면서 안전 인증이 있는 시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옥내·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·불연성 전선관 공사 ○ 콘센트, 스위치 등 교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LED 전등기구 ○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

- 1~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
- **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점포당 50만원 이내로 편성**
- (공용구간) 노후·알림·가스·기타부문 개별점포에 사업 추진 후 잔여 예산에 한해 화재·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 등을 정비·설치
 - 공용구간 정비는 시장당 총사업비(선정금액)의 10% 이내로 한정
 - 공용구간의 편의시설(아케이드, 사무실 등)의 교체는 불가하며, 공용구간 화재감시용 CCTV, 자동방화셔터, 아케이드 공용부 특수형 감지기(불꽃, 광전식, 정온식),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

6 신청·선정 절차

- (절차) 전통시장(신청) → 시·군·구(신청) → 시·도(신청) → 지방중기청(접수, 현장평가) →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서류평가) → 중기부(선정)
- (신청) 시·도(광역지자체)에서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
 - *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 접수 처리
 - ** [참고2] 및 [참고3] 확인하여 제출 필수

7 우대 및 감점 사항(공고일 기준)

- 공통 우대 및 감점 사항 : 공고문 참조
-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우대 사항
 - 최근 3년간('22~'24) 노후전선 정비사업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곳
 - 최근 5년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」 미수혜 시장 우대
 -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(소방·가스·전기등급 C이하)
 - 화재보험(공제+민간화재보험) 가입률이 높은 시장 우대(구간별 가점)
 - 광역(시·도)과 기초(시·군·구)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
 - 온누리상품권(지류·모바일·충전식카드) 가맹률이 높은 곳(영업점포수 대비)
 - *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 시 제외 [붙임8 증빙 제출 必]
-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감점 사항
 -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
 - * 지자체 담당자가 '전통시장통통'에 부여된 계정으로 확인하여 상태값 변경 필수
 - ** '미조치' 시 감점하며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
 - 법령 및 규정 위반,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
 - * 단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
 - 공단 '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'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

8 사업 신청 유의사항

① 공통

-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노점과 빈점포는 제외
-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곳 중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점포도 신청 가능하나, 현장평가 후 서면평가 전까지 사업자 등록* 후 증빙 제출 필수
 - * 미등록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장의 경우 미등록사업자를 영업점포수 및 동의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, 기한 내 사업자 미등록 시 선정 제외
- 지방비 미확보 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
-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
 - 단,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(인정서 등)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 - * 예시1 : 시장 입증서류가 "OO시장"으로 표기 → "OO시장 가동" 신청 불가
 - ** 예시2 : 시장 입증서류가 "OO시장 가동"으로 표기 → "OO시장 가동" 신청 가능
- 사업추진주체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
 - * 다만, 중기부(지방청)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
-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교부된 사업비,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됨에 유의
 - * 다만, 지원시장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(지방비 미확보 등) 1년 참여 제한

② 전기부문

- 전기부문을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개별점포는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'설계' 및 '검수'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 필수(총 2회)
 - 자문수당은 사업비에 포함하며 수행기관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

③ 소방부문

-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
 - 형식승인(감지기, 수신기, 중계기) 및 성능인증(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), KC인증(CCTV, 서버 등)을 득한 제품을 설치

④ 가스부문

-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공·정비 전문업체 선정

⑤ 기타부문

- 안전시설 품목을 설치한 경우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<서식6-2. 기타 안전시설 제품 지급 확인서> 제출 必
-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(5년)에 따라 소모성이 있는 품목 지원 불가

- [참고1]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부문별 지원품목
- [참고2]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
- [참고2-1] 안전관리패키지 신청시장 리스트(시·도 온나라제출용)
- [참고2-2]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소상공인24 신청서류 제출 매뉴얼
- [참고3]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 안내

- 붙임 1.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
2.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서
 3.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동의서(상인)
 4. 확약서
 5.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
 - 6-1.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
 - 6-2.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
 7.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
 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동의서
 9.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
 10.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신청서
 11.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계획서
 12.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동의서
 13.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확약서
 1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동의서(개별점포용)